

<자 료>

-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기준 고시
-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실험기기 고시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규정개정
-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중 개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환경청고시 제83-2호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년 3월 9일

환 경 청 장

1.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가. 장기폭기방법

설 비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크린	1) 파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간격 50mm 정도의 스크린을 파쇄 장치앞에 설치하고 유효간격 20mm 세스크린을 갖춘 예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유효간격 20mm 정도의 세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사조	유효용량은 시간당 최대 오수량의 60분의 1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고, 관류속도는 0.3m/초로 하여야 한다. 단 폭기침사조로 설치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대오수량의 60분의 3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으로 하고, 관류속도는 0.1m/초로 하여 소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대상 인원 1천인미 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유량조정조	1) 유량조정조에서 이송하는 시간당 오수량은 당해조에 유입하는 1일 평균 오수량의 24분의 1.5가 되게하여야 한다.					
	2) 유효수심은 1m(처리대상 인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조의 밑부분 및 윗부분에서 50센티미터에대한 부분은 당해 유효수심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기조	1) 유효수심은 2m 이상 4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폭기장치는 오수를 균등하게 교반하여 용존산소가 항상 1ppm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장기폭기조의 오니일량은 20~30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하는 0.1~0.4kg/m ³ ·일, 혼합액 농도(MLSS)는 3,000~6,000mg/l, 폭기시간은 18~36시간으로 한다.					
최종침전조	1) 유효용량은 일평균 오수량의 6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조의 수면적 부하는 8m ³ /m ² ·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월류벽을 설치하여 침전조에서 오수가 월류하는 구조로 하고 월류부하는 30m ³ /m·일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유효수심은 1.5m(처리대상 인원이 5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조의 저부가 홑바형일 때에는 홑바부분 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부분은 당해 유효수심에서 제외한다.					
	5)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평면의 형상을 원형 또는 정다각형으로 한다.					
	6) 홑바의 기울기는 수평면에 대하여 60도 이상으로 하고 저부에서 오니를 쉽게 뽑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오니를 한곳으로 집적시켜 자동적으로 뽑아내어 오니 농축저류조 또는 오니농축조에 이송하고 폭기조에 일평균 오수량 200% 이상을 1일에 반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설비구분	세부사항	항비	고
오니 농축저류조	1) 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유량조정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효용량은 유입 오니량과 농축오니의 반출 계획량을 감안한 적합한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2) 오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조내 농축을 위한 교반장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대상 인원이 1천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오니 농축조	1) 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유량조정조로, 농축된 오니를 오니저류조에 각각 이송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유효용량은 농축 오니의 반출계획에 적당한 용량으로 하고 유효수심은 2m 이상 4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오니의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조내 농축을 위한 교반장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대상 인원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농축오니저류조	유효용량은 농축오니의 반출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축오니의 반출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오니농축조를 설치한 경우에 갖춘다.	

나. 표준활성오니방법

설비구분	세부사항	항비	고
스크린, 침사조침전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1) 2실로 구분하여 직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2) 표면적부하 $2.3\text{m}^3/\text{m}^2 \cdot \text{일}$ 로 하여야 한다. 3) 제 1실의 유효용량은 총용량의 3분의 2로 한다. 4) 각실의 유효수심은 2m 이상 4m 이하로 한다. 5) 제 1실의 유입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6) 각실마다 유출관 또는 단층벽의 하단의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에서 유효수심의 약 2분의 1 깊이로 하여 부상물의 유출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처리대상 인원이 201인 이상의 것으로 유입수의 유량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처리대상인원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유량조정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참 고) $101 \leq n \leq 200 \quad V = 150q + q(n - 100)$	
활성오니조 (폭기조)	장기폭기 방법의 폭기조에 준하되 오니일령은 5~15일, BOD 부하는 $0.3 \sim 0.6\text{kg}/\text{m}^3 \cdot \text{일}$, 혼합액농도(MLSS)는 $1,500 \sim 3,000\text{mg}/\ell$, 폭기시간은 4~8시간으로 한다.	$n \geq 201 \quad V = 250q + 0.5q(n - 200)$ $n = \text{처리대상인원 (인)}$	
최종침전조	장기폭기 방법의 최종 침전조에 준하되 유효용량은 6분의 1을 8분의 1로 하고, 오니의 반송은 200%를 100%로 한다.	$V = \text{유효용량 (m}^3)$ $= 1 \text{인 } 1 \text{일 평균 오수량 (m}^3)$	
오니농축조 및 농축오니저류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하되 오니농축조에서 생기는 탈리액은 폭기조로 이송한다.		

다. 접촉산화방법

설비구분	세부사항	항비	고
스크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침전조	표준활성오니 방법에 준한다.		
유량조정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접촉폭기조	1) 2실 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가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유효용량은 1m^3 당 BOD 부하량이 $0.3\text{kg}/\text{일}$ 이하가 되게 하고 또한 1일 평균 오수량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 1실의 BOD 부하량은 $0.5\text{kg}/\text{일}$ 이하로 하고 총 유효용량 5분의 3에 상당하는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유효수심은 1.5m 이상 4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유효용량에 대한 접촉재의 충진율은 5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접촉재는 생물막에 의한 폐쇄가 생기지 않는 형상으로 하고 생물막이 부착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비	고
최종침전조, 오니농축조 및 농축오니저류조 라. 접촉안정방법	7) 폭기장치를 설치하여 실내의 오수를 균등하게 교반하고 용존 산소가 약 1ppm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또한 박리오니를 최종침전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제 1 실은 생물막을 박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박리오니를 인출하여 침전조, 오니농축저류조 또는 오니농축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소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침전조, 오니농축조 및 농축오니저류조

라. 접촉안정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크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침전조	표준활성오니방법에 준한다.					
유량침전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접촉조	장기폭기 방법의 폭기조에 준하되, 오니일령은 5~15일, BOD 부하는 0.1~1.2/kg/m ³ ·일, 혼합액농도(MLSS)는 1,000~3,000mg/ℓ, 접촉 시간은 0.5~1 시간으로 한다.					

최종침전조

오니재폭기조
(안정조)

오니농축조 및 농축오니저류조

마. 살수여상 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비	고
스크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침전조	표준활성오니 방법에 준한다.					
유량조정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설비구분

살수여상	세	부	사	항	비	고
구	분	저	울	고	울	
수리학적부하(m ³ /m ² 일)		1~4		10~40		
유기물(BOD)부하(kg/m ² 일)		0.08~0.32		0.32~1.0		
여과상의 깊이(m)		1.5~3.0		1.0~2.0		
재순환율(오수량에 대한 비)		0		0.5~3.0		
여재		쇄석·광재등		쇄석·광재·합성수지등		
구동		싸이폰 또는 펌프		펌프		

- 고정노즐 또는 회전살수기(회전살수기의 살수구와 여상의 표면간의 간격을 15cm 이상으로 할 것)로 여상의 표면에 균등하게 살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여재의 반침대의 밀면과 조의 밀부분간의 간격은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조의 밀면 기울기는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송기 및 배기를 위한 통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여재는 직경이 5cm 이상 7.5cm 이하의 경질의 쇄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호기성 생물막을 생성하기 쉽고 1m³당 표면적이 80m² 이상 공극율 9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싸이폰 또는 펌프는 부유물에 의한 폐쇄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비	고
최종침전조·오니 농축조 및 농축오 니저류조	장기폭기 방법에 준한다.					
바. 임호프탱크 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비	고
침전실	1) 침전실의 용량은 임호프탱크의 유입수가 3~4시간 체류되도록 하고 탱크내의 유속은 분당 0.3m이하가 되어야 한다.			전체용량을 2계열로 설치한다.		
	2) 침전실의 표면적의 표면부하는 1일 평균 1m ² 당 25~30m ²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경사는 수평 4에 수직 5의 비율로 하고 깊이와 폭에 대한 비는 3:1~5:1로 하여 구멍까지의 깊이는 1.5m이상 4.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탱크의 길이는 30m이내이어야 하고 전체의 깊이는 10m이내 이어야 한다.					
부패실	1) 부패실의 용량은 1일 평균 오수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용량을 2계열로 설치한다.		
	2) 바닥의 경사는 수평 2에 수직 1로 하고 스러지의 제거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며, 제거된 스러지는 충분한 경사를 준 지관을 통하여 자연히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컴실	1) 스컴실의 용량은 부패실 용량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고 대기에 노출된 표면은 부패실 평면의 25~30%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컴실의 폭은 청소시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45cm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 오수정화 시설의 건축용도별 오수량과 오수농도

오수정화 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오수량과 오수농도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된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나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개의 건축물에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하여 다음의 수치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용도별의 주시설에 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시설 건축용도의 오수량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적용 가산한다.

분 류	건 축 용 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비	고
		1 일 오 수 량	(ppm)		
1	급식시설 주택시설, 집회장시설, 사회복지시설, 점포시설, 오락시설, 자동차 차고, 학교시설, 사무소, 작업소, 역·버스터미널등	15ℓ/급식	350		
2	주택시설	주택·공동주택	200ℓ/인	200	
3	숙박시설	여관·호텔·모텔	300ℓ/인	200	1) 온천온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연회장, 결혼식장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용도의 부분면적에 대하여 20ℓ/m ² ·일을 가산하고 BOD는 연회장 300ppm, 결혼식장은 200ppm으로 한다.
4	의료시설	병 원	1,000ℓ/병상	300	1) 병상수가 3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500ℓ/병상·일로 한다. 2) 외래환자의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5	점 포	수퍼마켓 백화점 시 장	30ℓ/m ²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오수량은 35ℓ/m ² ·일, BOD는 300ppm으로 한다.
		식품접객 업 소	300ℓ/m ²	250	
6	학교시설	국민학교 중 학교	30ℓ/인 35ℓ/인	100	

	고등학교	40ℓ /인	
	및대학교		
7	사무소 행정관청 일반빌딩	15ℓ /m ²	100
8	작업소 작업장 공장 연구소	40ℓ /인	100

2. 분뇨정화조 설치기준

가. 부패탱크 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침전 및 소화 (부패조)				1) 2실이상 4실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2) 유효용량은 2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5m ³ 를 가산하여야 한다. 3) 제 1실의 유효용량은 당해용량의 2분의 1로 하고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실의 유효수심은 1m이상 3m 이하로 하고 유입관의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 3분의 1의 깊이로 하고 유출관 또는 밸브하단 개구부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2분의 1의 깊이로 하여 부상물 또는 스컴의 유출이 방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유출부분에서 부상물이나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단층벽이나 T관을 설치하되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맨홀을 두고, T관인 경우에는 최소 관경을 15cm로 한다. 7) 각실간에 벽은 유효수심의 1/3 높이에 30cm에 상당하는 구멍을 둔다. 8) 오니를 제거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한다.

나. 임호프탱크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침전 및 소화실				1) 침전실의 하단에 소화실을 설치하고 오수가 침전실을 경유하여 소화실로 유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유효용량은 1.5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5인당 0.5m ³ 을 가산하여야 하되 침전실의 체류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침전실				3) 침전실의 유효용량은 처리대상인원 5인당 0.1m ³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대상인원이 5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처리대상인원 5인당 0.05m ³ 을 가산하여야 한다. 4) 침전실은 부상물 또는 스컴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침전실의 흠바는 수평면에 대하여 60도 이상의 기울기로 하고 오바렘 부분은 수평거리에서 구멍의 폭 이상으로 하여 소화실내의 부상물이 침전실로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실				6) 침전실흠바의 하단부터 10cm 이하의 부분의 용량은 0.3m ³ 이상이어야 하며, 처리대상인원인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처리대상인원 매 5인당 0.3m ³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7) 침전실흠바의 구멍의 폭은 8cm이상 12cm 이하로 하고 그 구멍이 막히지 않게 잘 흐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스컴실				8) 스컴실의 표면적은 전체면적의 25%이상 30% 이하로 한다.

다. 기타방법

(1) 폭기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부패조				유효용량은 1.0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5m ³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폭기조(실)				1) 유효용량은 0.5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3m ³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산기장치로 조내의 오수를 균등하게 교반하여 용존산소를 0.3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최종침전조(실)				1) 유효용량은 0.2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1m ³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유입수의 침전작용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스컴의 부상을 적게 하며, 부상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접촉폭기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부패조	폭기방법에 준한다.			
접촉폭기조	1) 유효용량은 0.3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2m ³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접촉제는 생물막등에 의하여 폐쇄상태가 발생치 않는 형상으로 하고 생물막이 부착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유효용량에 대한 접촉재의 충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3) 폭기장치는 유입수를 균등하게 교반하고 용존산소를 공급하여 조내에서 응결된 오니를 부패조에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최중침전조	폭기방법에 준한다.			

(3) 살수여상방법

설비구분	세	부	사	항
부패조	부패탱크 방법에 준하되 유효용량 2m ³ 을 1.5m ³ 로 하고 초과인원에 대한 0.5m ³ 을 0.4m ³ 로 한다.			
살수여상	1) 여재부분의 체적은 0.8m ³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인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원 매 5인당 0.3m ³ 를 가산하여야 한다. 2) 여재의 깊이는 0.9m 이상 2m 이하로 한다. 3) 여재의 입경이 5cm 이상 7.5cm 이하의 경질 쇄석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호기성 생물막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살수통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통의 하면과 여재면과의 간격을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쇄석을 받치는 하면과 조의 저면과의 간격을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기관 및 송기공을 설치하는등 통기설비를 설치할 것. 7) 여재면에 대하여 균등하게 살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분뇨정화조의 재질

시 설 구 분	재	질
콘크리트	1)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각부분의 두께는 15cm 이상이어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또는 벽돌조로 하되 누수방지 및 설계용량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특수재료	1) 인장강도 ○주요 구조부분의 재료	
	단 위	FRP PVC 비 고
	kg/cm ²	6.0 × 10 ² 이상 4.8 × 10 ² 이상
	○주요구성부분	
	단 위	FRP PVC H · PE L · PE
	kg/cm ²	6.0 × 10 ² 이상 4.8 × 10 ² 이상 2.0 × 10 ² 이상 1.0 × 10 ² 이상
	2) 두께	
	사용재료	주요부분 기타부분
	FRP	3mm 이상 2mm 이상
	PVC	5mm 이상 3mm 이상
	PE	7mm 이상 5mm 이상
	3) 흡수율	
	단 위	FRP PVC PE 기 타
	%	0.5% 이하 0.4mg/cm ² 0.2mg/cm ² 0.5% 또는 0.4%mg/cm ²
	4) 경도(주요구조부분)	
	단 위	FRP PVC
	kg/cm ²	30 이상 95 이상
	5) 인장탄성율(주요구조부분)	
	단 위	FRP PVC
	kg/cm ²	6.5 × 10 ⁴ 이상 2.0 × 10 ⁴ 이상

6) 내약품성

시 험 액	FRP	PVC	PE	기 타
염산10%	0.5%이하	0.4mg/cm ² 이하	0.2mg/cm ² 이하	0.5%이하 또는 0.4mg/cm ² 이하
암모니아10%	1.0%이하	0.8mg/cm ² 이하	0.4mg/cm ² 이하	1%이하 또는 0.8mg/cm ² 이하

(주) 시험방법은 KS F 4803에 따른다.

환경청고시 제83-3호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및 동 규칙 제28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실험기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년 3월 9일

환 경 청 장

실 험 기 구 초 자 기 구

업 종 별	실 험 기 구			초 자 기 구		
	기	명	수 량	명	수 량	수 량
분뇨 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 전기전조기	200℃ 이상	1 대	1) 메스시린다	100ml	2 개
	2) 천 평	감도 0.1mg이 상	1 대	2) 메스시린다	250ml	2 개
	3) 수욕조	전기가온식	1 대	3) 메스시린다	500ml	2 개
	4) 데시케이터		1 대	4) 메스시린다	1 ℓ	2 개
	5) pH메타	유리전극식	1 대	5) 메스피펫	1ml	5 개
	6) 증류수 제조기	시간당 4ℓ 이상	1 대	6) 메스피펫	5ml	10개
	7) 냉장고	영하10℃ 이 하	1 대	7) 메스피펫	10ml	50개
	8) BOD 용부란기	20±1℃ 항온	1 대	8) 홀피펫	1ml	10개
	9) 마그네틱스터터		1 개	9) 홀피펫	3ml	10개
	10) 마그네틱바		1 개	10) 홀피펫	5ml	10개
	11) 온도계	0~250℃	3 개	11) 홀피펫	10ml	10개
	12) 온도계	0~100℃	2 개	12) 홀피펫	20ml	10개
	13) 시약스푼		2 개	13) 홀피펫	25ml	10개
	14) 집 계		1 개	14) 홀피펫	50ml	10개
	15) 뷰렛스탠드		1 개	15) 비이커	100ml	10개
	16) 진공펌프	1/3마력이상	1 대	16) 비이커	250ml	10개
	17) 대장균용배양기	35~37℃ 항온	1 대	17) 비이커	500ml	10개
	18) 고압기멸균기	수증기온도 125℃ 이상	1 대	18) 비이커	1 ℓ	5 개
	19) 크린벤치		1 대	19) 비이커	2 ℓ	2 개
	20) 시험관스탠드	5×10공	10개	20) 삼각플라스크	100ml	5 개
	21) 현미경		1 대	21) 삼각플라스크	250ml	5 개
	22) 알콜램프		3 개	22) 삼각플라스크	500ml	10개
	23) 백금이		1 개	23) 삼각플라스크	1 ℓ	5 개
	24) 콜로니카운터		1 대	24) 메스플라스크	100ml	3 개
	25) 에어레이터		1 대	25) 메스플라스크	250ml	3 개
			26) 메스플라스크	500ml	3 개	
			27) 메스플라스크	1 ℓ	2 개	
			28) 평량병 또는 증발접시		5 개	
			29) 시험관	5.5부	200개	
			30) 페트라디쉬	100×15mm	100개	
			31) 갈색시약병	500ml	10개	
			32) 갈색시약병	1 ℓ	5 개	

업종별	실험기구			초자기구		
	기	명	수량	초자	명	수량
쓰레기종말 처리 시설계 · 시공업	1) 봉상온도계 또는 기저항온도계	500℃ 이상	1 개	33) BOD병	300ml	30개
	2) 시료채취장치		1 셀	34) 뷰렛	25ml	1 개
	3) 흡입관		1 개	35) 뷰렛	50ml	1 개
	4) 흡수병		2 개	36) 회석수병	10ℓ	1 개
	5) 가열장치		1 대	37) 유리 여과기	G 2	5 개
	6) 냉각조		1 대	38) 흡인플라스크	1 ℓ	1 개
	7) 온도계	0 ~ 200℃	2 개	1) 메스피펫	10ml	5 개
	8) 가스메타 (적산유량계)		1 대	2) 삼각플라스크	500ml	10개
	9) 진공펌프		1 대	3) 삼각플라스크	250ml	10개
	10) 연결관		1 개	4) 메스플라스크	500ml	3 개
	11) 마노메타		1 대	5) 메스플라스크	250ml	3 개
	경사마노메타	} 중 1		6) 뷰렛	50ml	1 개
	수직마노메타			7) 뷰렛	25ml	1 개
	U자형마노메타			8) 메스시린다	500ml	1 개
	12) 흡수관		1 개	9) 메스시린다	100ml	1 개
	흡수관	} 중 1		10) 비이커	500ml	1 개
	U자관			11) 비이커	250ml	5 개
	13) 천 평	감도 0.1mg 이상	1 대	12) 깔대기	25cm	2 개
	화학천평	} 중 1			이상	
	자동천평			14) 응축기 (응축기법에 한함)		1 대
	15) 링겔만스모크차드		1 개			
	16) 순간유량계		1 대			
	flow메타	} 중 1				
	orifice 유량기			17) 분진포집기		1 셀
	이와 동등한 유량계					
18) 여지		1 셀				
원통여지	} 중 1					
원형여지			19) 연결관		1 개	
20) 흡수병		3 개				
21) 전기건조기	200℃	1 대				
22) 테세케이타		1 개				
23) 먼지츄브 (분진츄브를 사용할 경우)		1 셀				
24) 일산화탄소검지기		1 대				
25) 일산화탄소검지관		1 개				
26) NDIR계기(비분산적의 법경우)		1 대				

업종별	실험기구			초자기구		
	기	명	수량	초	자	수량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	1) 전기전조기	200℃ 이상	1 대	1) 메스시린다	100 ml	2 개
	2) 천 평	감도0.1mg 이상	1 대	2) 메스시린다	250 ml	2 개
	3) 메시케이타		1 개	3) 메스시린다	500 ml	2 개
	4) PH메타	유 리	1 대	4) 메스피펫	1 ml	5 개
	5) 증류수제조기	진극식		5) 메스피펫	5 ml	10개
	6) BOD 용부란기	시간당 4 ℓ 이상	1 대	6) 메스피펫	10 ml	10개
	7) 냉장고	20± 1℃ 항온	1 대	7) 홀피펫	1 ml	10개
	8) 마그네틱스터러	영하10℃ 이하	1 대	8) 홀피펫	2 ml	10개
	9) 마그네틱바		1 개	9) 홀피펫	3 ml	10개
	10) 온도계	0 ~ 250℃	1 개	10) 홀피펫	5 ml	10개
	11) 온도계	0 ~ 100℃	1 개	11) 홀피펫	10ml	10개
	12) 시약스푼		2 개	12) 홀피펫	20ml	10개
	13) 집 계		1 개	13) 홀피펫	25ml	10개
	14) 뷰렛스탠드		1 개	14) 홀피펫	50ml	10개
	15) 에어레이터		1 대	15) 비이커	100ml	10개
	16) 진공펌프	1/3마력이상	1 대	16) 비이커	250ml	10개
	17) 비색계 (잔류염소측 정용)		1 대	17) 비이커	500ml	10개
	18) 글라스화이버필터 (SS용)		1 박스	18) 비이커	1 ℓ	5 개
			19) 삼각플라스크	100ml	5 개	
			20) 삼각플라스크	250ml	10개	
			21) 삼각플라스크	500ml	10개	
			22) 삼각플라스크	1 ℓ	5 개	
			23) 메스플라스크	100ml	3 개	
			24) 메스플라스크	250ml	3 개	
			25) 메스플라스크	500ml	3 개	
			26) 메스플라스크	1 ℓ	2 개	
			27) 뷰 렛	25ml	1 개	
			28) 뷰 렛	50ml	1 개	
			29) 갈색시약병	500ml	10개	
			30) 갈색시약병	1 ℓ	10개	
			31) 유리여과기	G 2	5 개	
			32) 흡인플라스크	4 ℓ	1 개	
			33) 흡인플라스크	500ml	1 개	
			34) BOD 병	300ml	30개	
			35) 회석수병	10 ℓ	1 개	
분뇨정화조설계·시 공업	1) 전기전조기	200℃ 이상	1 대	1) 메스시린다	100ml	1 개
	2) 천 평	감도0.1mg 이상	1 대	2) 메스시린다	250ml	1 개
	3) 메시케이타		1 개	3) 메스시린다	1 ℓ	1 개
	4) pH메타	유 리	1 대	4) 메스피펫	1 ml	5 개
	5) 증류수제조기	진극식		5) 메스피펫	10ml	10개
	6) 냉장고	시간당 4 ℓ 이상	1 대	6) 홀피펫	1 ml	5 개
	7) BOD 용부란기	영하10℃ 이하	1 대	7) 홀피펫	2 ml	5 개
	8) 마그네틱스터러	20± 1℃ 항온	1 대	8) 홀피펫	3 ml	5 개
	9) 마그네틱바		1 개	9) 홀피펫	5 ml	5 개
	10) 온도계	0 ~ 100℃	1 개	10) 홀피펫	10ml	5 개
	11) 온도계	0 ~ 250℃	1 개	11) 홀피펫	20ml	5 개
			12) 홀피펫	25ml	5 개	
			13) 홀피펫	50ml	5 개	

업종별	실 험 기 구			초 자 기 구		
	기	명	수 량	초 자	명	수 량
	12) 시약스푼		1 개	14) 비이커	100ml	5 개
	13) 뷰렛스탠드		1 개	15) 비이커	250ml	5 개
	14) 에어레이터		1 개	16) 비이커	500ml	5 개
				17) 비이커	1 ℓ	3 개
				18) 삼각플라스크	100ml	5 개
				19) 삼각플라스크	250ml	5 개
				20) 삼각플라스크	500ml	10개
				21) 삼각플라스크	1 ℓ	5 개
				22) 메스플라스크	300ml	1 개
				23) 메스플라스크	250ml	1 개
				24) 메스플라스크	500ml	3 개
				25) 메스플라스크	1 ℓ	2 개
				26) BOD 병	300ml	30개
				27) 희석수병	20 ℓ	1 개
				28) 갈색시약병	500ml	4 개
				29) 갈색시약병	1 ℓ	2 개
				30) 뷰 렛	50ml	1 개

분뇨정화조제조업 1. 재질시험	1) 만능재료시험기	2.5톤	1 대			
	2) 마이크로메타	0.1mm ~25mm	1 대			
	3) 천 평	150g 0.0001g	1 대	1) 비이커	500ml	5 개
	4) 항온조		1 대			
	5) Rockwell 경도기		1 대			

2. 기능시험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에 준하되 잔유염소 측정용비색계를 제외한다.

(주) 분뇨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실험기기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온도이외의 실험기구(17~25번)와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실험기기중 수분·온도이외의 실험기구(15~26번)에 해당된 시험은 측정대행 기관등의 대행계약으로 같음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규정개정(83. 3. 30 개정)

◎ 건설부훈령 제597호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규정중 제2 조 제1 항의 시험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개정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1. 흙의 물리시험	1.	함수량	810		2. 흙의 역학시험	10.	입 도	13,170	
	2.	비 중	1,960			1.	일축압축	7,970	
	3.	액성한계	2,540			2.	직접급속전단	11,550	
	4.	소성한계	1,850			3.	압밀급속전단	27,720	
	5.	추축한계	2,080			4.	완속전단	63,990	
	6.	현장함수당량	1,850			5.	비배수비압일삼축압축	20,330	
	7.	원심당량	3,000			6.	압밀비배수삼축압축	58,440	
	8.	투수시험	14,090			7.	압밀배수삼축압축	82,120	
	9.	200체통과	1,960			8.	압 밀	38,120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수수료	비 고
	9. 다 집	10,860		15. 안정도(꺾임법)	2,310		
	10. 들밀도	2,660		" (오토크레이법)	5,310		
	11. 흡시멘트배합설계	93,210		16. 불리딩율	3,000		
3. 지내	1. 현장 CBR	1,850		17. 인장강도비	4,740		
력시험	2. 실내 CBR	23,220		18. 압축강도비	5,890		
	3. 도로평판재하	2,430		19. 접착강도비	5,660		
	4. 건축평판재하	7,280		20. 휨강도비	6,350		
	5. 말뚝재하	11,550		21. 전단강도비	6,350		
	6. 양카인발	5,890		22. 포조란활성도	5,780		
4. 토질	1. 동적콘관입	7,850		23. 건조수축변화	3,930		
조사	2. 정적콘관입	2,890		24. 시멘트알카리반응	8,660		
	3. 스웨덴식관입	1,160		25. 동결융해	20,790		
	4. 벤	5,080		26. 산화칼슘	5,200		
	5. 오-가보오링	별도계상		27. 산화마그네슘	3,580		
	6. 보오링	"		28. 압축강도	4,970		
5. 시멘	1. 비 중	1,500		29. 인장강도	3,810		
트	2. 분말도	3,230		30. 휨강도	4,160		
	3. 안정도	5,310		31. 접착강도	3,230		
	4. 응결시간	2,890		32. 접착전단강도	3,700		
	5. 압축강도	4,850		33. 콘시스템시	2,080		
	6. 인장강도	3,930		7. 역청	1. 비 중	2,080	
	7. 수화열	9,360		재료	2. 침입도	1,850	
	8. 위응결	3,580			3. 신 도	3,470	
	9. 용적변화	3,000			4. 인화점	1,730	
	10. 화학저항성	6,470			5. 박막가열	5,430	
	11. 강열감량	1,730			6. 용해도(사염화탄소)	2,310	
	12. 불용해잔분	4,040			7. 연화점	2,770	
	13. 무수황산	4,390			8. 회 분	2,310	
	14. 산화마그네슘	3,350			9. 증발감량	4,040	
	15. 실리커	6,930			10. 점 도	4,160	
	16. 산화알루미늄	4,040			11. 수 분	4,040	
	17. 산화칼슘	4,620			12. 증 류	5,310	
	18. 산화제 2 철	3,000			13. 증류잔사	6,240	
	19. 산화나트륨	6,120			14. 제분석	2,660	
	20. 산화칼륨	7,280			15. 저장안정도	9,240	
	21. 유리석회	4,270			16. 피막박리	4,500	
6. 혼화	1. 습분	2,310			17. 저온안정도	9,240	
제 및	2. 강열감량	1,960			18. 골재혼합	5,780	
혼합제	3. 실리커	6,010			19. 토양혼합	4,850	
	4. 산화알루미늄	4,040			20. 전하(P.H)	1,960	
	5. 산화제 2 철	3,120			21. 부착성	4,040	
	6. 무수황산	4,040			22. 응고성	3,930	
	7. 알카리	6,580			23. 시멘트혼합	4,850	
	8. 비 중	1,620			24. 증발잔유물	6,700	
	9. 단위수량	1,850			25. 치수 및 계수	3,350	
	10. 응결시간	2,890			26. 성분분석	10,050	
	11. 용적변화	3,000			27. 최적가열온도	6,240	
	12. 공기량	690			28. 부유점	3,470	
	13. 슬럼프	690			29. 증발시험	2,660	
	14. 분말도	3,470		8. 도로	1. 비 중	1,960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2.	작업성			1,500			49.	인화점				1,040		
	3.	건조시간			1,620			50.	내산성				1,850		
	4.	도막의 상태			1,270			51.	스키닝				460		
	5.	용기중의 상태			810			52.	스트레이 작업성				1,160		
	6.	체분석			1,500			53.	냄 새				350		
	7.	온폐력			1,730			54.	리트링				350		
	8.	내굴곡성			2,660			55.	절 적				350		
	9.	불접착건조성			2,540			56.	내휘발유성				690		
	10.	저장안정성			1,850			57.	점 도				580		
	11.	내알카리성			4,390			58.	증 류				1,730		
	12.	가열잔분			1,730			9. 합성	1. 비 중				1,040		
	13.	용제불용분			1,620			수지재	2. 접착강도				2,310		
	14.	용제불용물조정 (산화티타늄)			8,090			료	3. 압축강도				3,120		
		용제불용물조정 (크롬산연정량)			4,160				4. 안장강도				2,660		
	15.	내수성			1,730				5. 휨강도				2,770		
	16.	내염수성			2,080				6. 비틀림저항				2,890		
	17.	내충격성			2,080				7. 굴절반복				1,160		
	18.	촉진내후성			9,700				8. 취화온도				1,960		
	19.	내마모성			5,310				9. 소 성				1,160		
	20.	황면도			1,730				10. 선팽창율				2,430		
	21.	확산반사율			1,500				11. 흐 름				2,540		
	22.	내습성			2,890				12. 하중변형				1,730		
	23.	내열성			2,430				13. 경화도				690		
	24.	내유성			1,730				14. 흡수성				1,160		
	25.	착색력			1,620				15. 내약품성				5,080		
	26.	색 상			1,730				16. 신장율				3,930		
	27.	흡유성			1,390				17. 열흡수량				2,540		
	28.	수 분			1,160				18. 노 화				6,810		
	29.	블리딩			2,540				19. 인 열				4,160		
	30.	주 도			1,160			10. 고무	1. 경 도				1,730		
	31.	흡수성			2,660			제품	2. 노화시험				5,890		
	32.	연화도			1,730				3. 신장영구줄음				2,190		
	33.	퇴색시험			4,040				4. 인장시험(강도, 신장율)				2,660		
	34.	가사시간			1,390				5. 인열강도				2,660		
	35.	내산성			2,310				6. 박 리				2,660		
	36.	내휘발성			3,230				7. 압축영구줄음				1,730		
	37.	압축강도			2,660				8. 밀 도				1,040		
	38.	인장강도			2,770				9. 내유성				7,510		
	39.	휨강도			3,000				10. 내수성				1,040		
	40.	접착전단강도			2,660				11. 내약품성				5,780		
	41.	신장율			2,310			11. 방수	1. 비 중				1,620		
	42.	열안정성(60℃)			1,850			제	2. 응결시간				2,890		
	43.	냉동안정성(유연성)			1,390				3. 안정성				2,540		
	44.	스트리킹성			350				4. 강도비				5,200		
	45.	희석제의 비휘발성물질			810				5. 흡수비				4,040		
	46.	블휘발전색채			2,310				6. 투수비				6,700		
	47.	내세척상			1,730			12. 수질	1. 탁 도				2,190		
	48.	광택성(60℃)			920				2. 색 도				2,310		
									3. 폐 하				2,310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4.	알칼리도			2,190			팔트혼	2.	마살안정도			1,500		
	5.	산 도			2,310			화제	3.	아스팔트 함량					
	6.	경 도			2,310					아스팔트 콘크리트			15,130		
	7.	증발잔유물			1,390					아스팔트 마카담			27,370		
	8.	황산염			4,270				4.	추출체가름			1,850		
	9.	용존산소			2,540				5.	파막박리			3,810		
	10.	전기전도도			2,190				6.	마살공시체 제작			1,270		
	11.	시안화물			2,190				7.	밀 도			230		
	12.	강도비			5,310				8.	평탄성			1,850		
	13.	염화물			1,620				9.	코아채취			1,390		
13. 골재	1.	체가름			1,730				10.	벤클만변위			2,890		
	2.	비중 및 흡수			1,730				11.	미끄럼저항			1,730		
	3.	단위중량 및 빈틈율			1,850			16. 콘크	1.	압축강도			1,160		
	4.	안정성			6,700			리트제	2.	휨강도			1,160		
	5.	마모율			2,770			품	3.	PC톤 인장 및 압축			4,160		
	6.	표면수량			1,040				4.	관의압(450mm이하)			1,160		
	7.	#200 체통과량			1,160				5.	관의압(φ 500~1,000)			1,390		
	8.	유기불순물			1,620				6.	관의압(φ 1,000이상)			1,730		
	9.	점토덩어리			1,390			17. 스페	1.	꺾 임			1,160		
	10.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11,550			이트	2.	흡 수			1,160		
	11.	연석량			1,620				3.	충 격			580		
	12.	염화물			1,390				4.	투 수			920		
	13.	강열감량			1,730				5.	형상 및 치수			230		
	14.	불용해 잔분			4,040			18. 시멘	1.	외관 및 치수			120		
	15.	실리카당량			6,810			트벽돌	2.	압 축			580		
	16.	물탈강도			8,780			19. 시멘	1.	외관 및 치수			120		
	17.	모래당량			5,540			트블럭	2.	압 축			580		
14. 콘크	1.	배합설계			56,830			20. 시멘	1.	외관 및 치수			120		
리트	2.	공시체제작			2,890			트기와	2.	휨			460		
	3.	콘시스템시			810				3.	흡 수			810		
	4.	슬럼프			460			21. 유리	1.	압 축			690		
	5.	공기함유량			1,040			블럭	2.	급 냉			460		
	6.	블리딩			1,040				3.	내부비틀림			460		
	7.	씻기분석			6,120				4.	외관검사 및 치수			120		
	8.	압축강도			690			22. 유리	1.	두께측정			460		
	9.	휨강도			810			섬유	2.	비 중			230		
	10.	인장강도			810				3.	열전도율			2,660		
	11.	공시체캐핑			460			23. 금속	1.	인			4,040		
	12.	부착력			14,440			재료	2.	망 간			1,730		
	13.	밀 도			690				3.	규 소			4,160		
	14.	시멘트 함유량			22,290				4.	탄소 및 유황			10,510		
	15.	탄성계수 및 포아 손비			6,010				5.	인장강도 및 신율			1,390		
	16.	건조수축기			3,470				6.	굴곡시험(구부림, 반복굴곡)			920		
	17.	투 수			16,520				7.	리락세이손			25,180		
	18.	비파괴			580				8.	충 격			2,310		
	19.	탄성파속도			580				9.	가열충격			6,120		
	20.	팽창율			3,000				10.	냉각충격			7,160		
15. 아스	1.	배합설계			46,080				11.	압축강도			1,160		
									12.	단위중량			230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13.	아연도금부착량			3,120			9.	표면접착성시험				690		
	14.	피로강도			19,520			10.	형상 및 치수측정				120		
	15.	크리프			10,860			29.	목재	1.	박리저항		1,500		
	16.	비틀림강도			8,890			가공품	2.	나사못유지력		1,500			
	17.	비파괴			2,540			시험	3.	비중시험		350			
	18.	다리두께			2,660				4.	함수율		920			
	19.	경 도			1,850				5.	휨강도		1,390			
	20.	현미경조직검사			2,770				6.	형상 및 치수측정		230			
	21.	아연도균일성			3,000			30.	보통	1.	형상 및 치수		120		
24.	석재	1.	비중및	흡수량(석재)	1,500			벽돌시	2.	압축강도시험		580			
및석분		2.	비중(석분)		1,850			험	3.	흡수시험		810			
		3.	습 분		2,190			31.	도자	1.	형상 및 치수측정		350		
		4.	입 도		2,540			기타일	2.	흡수율시험		350			
		5.	압축강도		1,040			시험	3.	균열시험		1,160			
		6.	인 성		690				4.	뒤틀림시험		120			
		7.	석재시편제작		2,770			32.	보온	1.	열전도율시험		2,660		
25.	목킹	1.	수축율		2,660			계(발	2.	밀 도		580			
폼파운		2.	보유성		1,730			포리티	3.	굴곡강도시험		1,040			
드		3.	스럼프		1,960			렌)시험	4.	내압시험		920			
		4.	부착성		2,080				5.	흡수시험		1,040			
		5.	경화율		1,850				6.	연소시험		350			
		6.	균 열		1,960				7.	형상 및 치수측정		120			
		7.	내알카리성		3,230			33.	섬유	1.	휨강도		1,390		
26.	목재	1.	비중시험		350			제품시	2.	열전도율		2,660			
(일반)		2.	평균연료폭측정		230			험	3.	함수율시험		690			
시험		3.	함수율시험		350				4.	비중측정		580			
		4.	흡수량시험		460				5.	흡수율시험		810			
		5.	압축시험		810				6.	형상 및 치수		120			
		6.	휨시험		810				7.	감염감량		1,960			
		7.	인장시험		1,040				8.	습 분		460			
		8.	수축율시험		460				9.	인장강도		1,390			
		9.	못뽑기저항		920			34.	난연	1.	기재시험		13,860		
		10.	갈라짐시험		920			자재시	2.	표면시험		17,330			
		11.	충격휨시험		350			험							
		12.	경도시험		1,040			35.	아스	1.	치수 및 무게		690		
		13.	절단시험		920			팔트루	2.	원자의 단위무게		1,160			
		14.	흡음성시험		580			핑시험	3.	원자에 대한 아스		1,160			
27.	합판	1.	삶은반복시험		920				팔트칩투울						
시험		2.	상태접착력시험		690				4.	인장강도		460			
		3.	함수율시험		350				5.	집기시험		230			
		4.	온냉침수시험		810				6.	아스팔트 칩투상황		1,160			
		5.	형상 및 치수측정		120			36.	유속	1.	유속계검정		21,250		
28.	프리	1.	내수성시험		690			계검정							
트합판		2.	내굴곡하중시험		1,620			37.	방,	1.	방화1 급 가열시험		212,520		
시험		3.	내한성시험		1,270			내화시	2.	방화2 급 가열시험		200,970			
		4.	내후성시험		1,160			험	3.	방화3 급 가열시험		191,730			
		5.	내산성시험		1,270				4.	벽용30분 내화시험		212,520			
		6.	내알카리성시험		1,620				5.	벽용1 시간 내화시험		266,810			
		7.	내알칼리시험		1,730				6.	벽용2 시간 내화시험		377,690			
		8.	내오염성시험		690				7.	벽용3 시간 내화시험		488,570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시험구분	시	험	종	목	개 정 수수료	비	고
	8.	벽용 4 시간	내화시험		595,980			45.	연소				34,000		
	9.	보, 바닥용 30분	내화 시험		222,920				개스독						
	10.	보, 바닥용 1 시간	내화시험		284,130	운반비및		46.	구조	1. 측방향압축시험			38,380		
	11.	보, 바닥용 2 시간	내화시험		408,870	잔재처리			성능시험	2. 국부압축시험			25,430		
	12.	보, 바닥용 3 시간	내화시험		408,870	비는 포				3. 단순휨시험			27,590		
	13.	보, 바닥용 4 시간	내화시험		654,890	함안됨				4. 국부하중휨시험			29,510		
	14.	방화 1 급 시험 (기동용)			365,380					5. 면내전단시험			27,870		
	15.	방화 2 급 시험 (기동용)			348,400					6. 조립된관 면내전단 시험			27,990		
	16.	방화 3 급 시험 (기동용)			334,250					7. 조립된 내력용관의 면내휨전단시험			28,080		
	17.	기동용 30분 내화시험			365,380					8. 조립된 비내력용관의 면내전단휨시험에 의한 변형시험			27,540		
	18.	기동용 1 시간	내화시험		452,430					9. 측방향압축시험 (스트레인측정)			43,890	스트레인 게이지및 부속품은 의뢰지부 담	
	19.	기동용 2 시간	내화시험		626,520					10. 단순휨시험 (스트레인 측정)			31,030		
	20.	기동용 3 시간	내화시험		800,610					11. 국부하중휨시험 (스트레인측정)			31,500		
	21.	기동용 4 시간	내화시험		974,690			47.	건설	1. 정도시험					
	22.	재하시험			4,390				기계	쇼 어			1,730		
	23.	충격시험			5,660					브리넬			1,850		
	24.	주수시험			5,660					로크웰			2,430		
	25.	차연시험			35,810					2. 충격시험			2,310		
38.	각종	1. 기밀시험			36,960					3. 스프링시험			1,270		
	창호시									4. 비틀림시험			8,890		
	험									5. 금속조직시험			2,770		
39.	철제	1. 외관 및 치수(틀재)			420					6. 크리프시험			10,860		
	창호시	2. 외관 및 치수(창문)			420					7. 피로시험			19,520		
	험									8. 견인력시험			2,540		
40.	알루	1. 외관 및 치수(틀재)			420					9. 기관성능시험			18,250		
	미늄창	2. 외관 및 치수(창호)			420					10. 소음 및 진동시험			6,700		
	호시험	3. 내력강도			2,100					11. 등판능력시험			5,200		
41.	목재	1. 외관 및 치수(틀재)			420					12. 건설기계중량시험			3,230		
	창호시	2. 외관 및 치수(창문)			420					13. 유압시험			2,430		
	험	3. 함수율			1,050					14. 배기가스분석시험			5,990		
42.	합성	1. 외관 및 치수(틀재)			420					15. 주행시험			3,050		
	수지창	2. 외관 및 치수(창문)			420					16. 유압호스시험			3,900		
	호	3. 인장강도			1,890										
		4. 충격강도			4,940										
43.	콘크	1. 외관 및 치수(틀재)			420										
	리트창	2. 휨강도			2,100										
	호시험														
44.	소성	1. 외관 및 치수			420										
	블럭고	2. 압축강도			1,160										
	압블럭	3. 흡수율			1,050										
	시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83. 3. 31 개정)

☉ 대통령령 제11,087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 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3조의2 본문중 “과소토지의 규모”를 “과소토지 등의 규모”로 한다.

제5제 제1항 본문중 “각호와 같다.”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규모의 변경이 없는”을 “규모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건축물”을 “건축시설”로 한다.

제6제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시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법 제11조 제5항”을 “법 제11조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중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현금·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국채·지방채(이하 “현금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간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비용부담의 내용으로서 그 납부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제1항 제6호중 “시행인가신청당시의 평가액”을 “시행인가신청당시의 개략적인 평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중 “그 요지를 공고하고,” 다음에 “관계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를 추가한다.

제21조 제1항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법 제17조 제2항·법 제30조 제2항·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항중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제31조 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제31조 제1항·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31조 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제31조 제1항·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중 “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개발자의 경우는 사업비의 10퍼센트
2.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개발자의 경우는 사업비의 20퍼센트

제36조 제2항중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를 “현금등으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예치현금 또는 예치보증보험증권은”을 “예치된 현금등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절차”를 “절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양신청을 할 때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제4호중 “건축시설”을 “대지 및 건축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과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42조 제2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2. 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로 분양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1필지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2인 이상의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게 될 때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과 제17조 제2항·제34조·제35조·제38조 제3항 및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법 제43조에 의한 체비지·보류지 또는 보류건축 시설을 정하여 비용에 충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분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당해 건축시설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에 속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바닥면적 기타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시설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는 공유로 한다.

제44조 제3항중 “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6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개발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3. 재개발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 및 사무용품비·이자 기타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7조 제1항중 “시중은행의”를 “금융기관의”로 한다.

제54조중 “5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55조중 “대출이율은 연리11퍼센트 이상 16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고,”를 “대출이율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로 한다.

제56조 본문중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를 “주택개발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재개발구역의 지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면적의 정정

2.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고시

3. 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그 고시와 동 계획의 시장·군수에의 송부. 다만,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 사업계획의 결정과 재개발사업 계획으로서 행하는 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면적축소 및 그 폐지에 관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그 고시와 재개발사업의 대행명령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및 그 고시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8. 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따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지시 및 의견 채택여부의 통지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양공사를 “공사”라 한다) 또는 특수법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의 인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와 예치금의 결정 등 조치

1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와 그 변경인가와 의견청취

13. 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검사필증의 교부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

14.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부담금의 결정

15. 제5호·제7호·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등의 고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인 사업계획의 변경중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당초의 사업계획의 결정 당시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건설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제8호 및 제15호 외의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도시계획위원회에의 토지등 소유자의 참여) ① 법 제68조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0조 (분양예정 대지 등의 가액평가 등) ① 법 제4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당해 재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수는 10인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1. 토지 등의 소유자 30퍼센트
2. 법관·변호사 또는 공증인 20퍼센트
3.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퍼센트

◇ 都市再開發法 施行令 改正理由

都市再開發法の 改正(1982. 12. 31 法律 第 3,646號)에 따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고, 同法の 改正에 의하여 廢止된 中 都市再開發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 등에 關한 事項을 削除하며, 아울러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第 3 開發者가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의 不實防止를 위하여 同事業 施行의 認可時에 당해 第 3 開發者로 하여금 豫置하도록 하는 豫置金額을 中 에는 事業費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建設部長官이 定하도록 하던 것을 第 3 開發者의 指定要件의 區分에 따라 事業費의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定하도록 하되, 당해 再開發區域안의 土地面積의 2분의 1 이상 所有權을 가진 第 3 開發者의 경우에는 豫置義務를 免除하도록 하여 당해 第 3 開發者의 負擔을 輕減시킴으로써 再開發事業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36條 第 1 項)
- 나. 土地 등의 所有者, 大韓住宅公社 및 第 3 開發者 등이 作成하는 規約 및 事業施行 計劃書에는 再開發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費用의 負擔에 關한 規定이 포함되도록 補完하여 정함으로써 費用負擔에 關한 粉爭의 素地를 제거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퍼센트
5. 관계행정 기관의 공무원 10퍼센트
- ③ 가격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가격평가 신청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내지 제7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함(令 第17條 第 2 項, 第34條 및 第35條).

- 다. 土地 등의 所有者가 再開發事業에 제공되는 土地 또는 建築物에 의하여 分讓받을 수 있는 것외에 工事費등 事業施行에 必要한 費用을 追加로 負擔하고 그 費用의 負擔에 의하여 垡地 및 建築施設의 追加分讓을 받고자 할 때에는 分讓申請을 할 때에 그가 所有하던 中 中의 土地 또는 建築物의 개략적인 評價類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金額을 施行者에게 納入하도록 함으로써 事業施行에 따른 工事費의 公平分擔과 事業의 促進을 기하도록 함(令 第38條 第 3 項).
- 라. 人口 100萬人 이상인 市가 再開發事業基金으로 每年 積立하는 金額을 당해 年度에 徵收한 都市計劃稅 總額의 5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引上調整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再開發事業 基金의 財源을 확충하도록 함(令 第54條).
- 마. 再開發事業에 關한 事項의 審議를 위하여 構成되는 地方都市計劃 委員會는 당해 再開發區域안에 居住하거나 당해 區域안의 土地 등을 所有하는 者 2人 이상이 參與하도록 함(令 第59條).
- 바. 分讓豫定 垡地 또는 建築施設의 價格評價를 위하여 市郡에 設置된 價格評價委員會의 委員의 構成比率을 合理的으로 調整함(令 第60條). <법제처 제공>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83. 3. 31 개정)

◎ 대통령령 제11,088호

부 칙

이 영은 1983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중 “1983년 3월 31일”을 “1983년 9월 30일”로 한다.

◇ 特定建築物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施行令 改正理由

特定建築物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對象建築物의 所有者는 同法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申告期間인 1983年 3月 31日까지 그가 所有하고 있는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 施工建築物을 申告하도록 되어 있고, 同 申告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는 處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申告期間內에 申告하지 못한 者에게 申告期間을 延長하여 함으로써 申

告惠澤이 널리 미치도록 하여 申告하지 못함으로 인한 處罰 對象을 最少化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對象建築物의 所有者가 市長·郡守에게 하는 申告의 期間을 延長하여 중 1983年 3月31日을 1983年 9月30日로 함(令 第 4 條)